#### 자금운용규칙

제정 2012. 7.20 개정 2014. 3.21 시행 2014. 3.21 개정 2015. 2.12 시행 2015. 2.12 개정 2015. 4.17 개정 2016. 2. 5 시행 2016. 2. 5 개정 2016. 7. 1 시행 2016. 7. 1 개정 2019. 4.23 시행 2019. 5. 1 개정 2020. 8.18 시행 2020. 8.20 개정 2021.10.28 시행 2022.10. 1 개정 2024. 3.7 시행 2024. 3.11

#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절 개 요<신설 2021.10.28.>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회계규정 제26조(자금계획)와 제27조(자금운용) 에 의하여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·유동성 확보 및 수익성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자금 운용에 관하여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시행령, 정관,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3.21><개정 2016.2.5.><개정 2016.7.1.><개정 2021.10.28.>

#### <개정 2022.09.28.>

- 1. "자금"이라 함은 재무상태표 상 유동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, 기타금융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기타금융자산을 말한다.
- 2. "예치금"이라 함은 공사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장·단기로 예 치한 자금으로서 현금 및 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- 3. "증권"이라 함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.
- 4. "금융상품투자"란 예금, 펀드, 채권 등 제14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투자대상을 말한다.
- 5. "혁신투자"란 벤처투자, 문화산업 관련 투자, 기타 혁신성장 신사업 관련 투자 등 제16조에 따른 투자대상을 말한다.
- 5의2. "적정유동성규모"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자 준비해야할 자금의 규모를 말한다.
- 5의3. "허용위험한도"란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.
- 5의4. "허용범위"란 자산배분에서 마련된 목표 허용 변동치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비중 범위를 말한다.
- 5의5. "벤치마크"란 각 운용자산의 성과를 비교·평가하기 위한 지표 로서, 각 운용자산과 위험이 유사한 투자자산의 수익률을 말한다.
- 6. "관리자"라 함은 자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.

7. "위탁운용"이라 함은 외부 위탁운용사에게 포트폴리오의 구성, 매매시점 등 투자재량을 위임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 <삭제 2021.10.28.>

제5조 <삭제 2021.10.28.>

#### 제 2 절 자금운용의 원칙<신설 2021.10.28.>

- 제5조의2(자금운용원칙) 공사는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 력을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안전성 : 경기변동,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성이 낮을 것
  - 2. 유동성(환금성) : 현금화에 어려움이 없으며 현금화에 따른 수수 료 및 부대비용을 최소화할 것
- 3. 수익성 : 연간자금수지계획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[제7조에서 이동 <2021.10.28.>]

#### 제 3 절 자금운용위원회와 조직<신설 2021.10.28.>

제5조의3(자금운용위원회) ①공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혁신투자의 자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상의 자금운용

-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와 혁신투자 자금운용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2.9.28.>
- ②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는 공사의 자금운용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2.9.28.>
  - 1. 자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  - 2. 자금운용규칙 개정 등 자금운용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의 투자환경 급변에 따른 투자상품 안정성 및 위험관리 관련 사항으로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
- ③제2항의 자금운용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.
- ④제2항의 자금운용위원회는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의 위험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⑤혁신투자 자금운용위원회는 혁신투자 상품의 결정 및 변경,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, 기 투자사업 중 투자환경 급변 등으로 투자의 안정성 및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사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 등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⑥제5항의 자금운용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,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.

- ⑦제5항의 자금운용위원회는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⑧제2항의 자금운용위원회 주관부서는 조직규정에 따른 자금관리 담당부서로 하고, 제5항의 자금운용위원회 주관부서는 조직규정에 따른 투자사업관리 담당부서로 한다.
- ⑨자금운용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심의·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⑩위원 또는 자문위원 선정 등 자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[제12조, 제13조, 제21조에서 일부 이동 및 개정 <2021.10.28.>] 제6조(자금운용 조직의 권한 및 역할) ①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 담당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「자금운용규칙」,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 및 자금운용 방식과 관련한 기준 관리
- 2. 연간자금수지계획과 월별자금수지계획 수립 후 임원 및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에 보고
- 3.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(잔고)증명을 발부받아 통장 및 장부금액 과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 실시
- 4. 적정유동성규모 관리 및 자금 유동성위험을 최소화
- 5. 금융기관 예치

- 6.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기준 관리 및 모니터링
- 7. 자금 운용성과 분석 및 평가, 임원 및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 원회에 보고
- ②혁신투자 자금운용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혁신투자 운용 방식과 관련한 기준 관리
  - 2. 혁신투자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- 3. 혁신투자 운용계획 수립 및 실행
  - 4. 혁신투자 상품 선정 및 위험관리
  - 5. 기타 혁신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
- ③공사는 내부연수 및 외부교육을 활용하여 자금운용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9.28.>
- [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21조, 제22조에서 일부 이동 및 개정 <2021.10.28.>]

[본조제목개정 2021.10.28.]

# 제 2 장 자금운용정책<개정 2021.10.28.> 제 1 절 운용자금 분류 및 적정유동성<개정 2021.10.28.>

제7조(운용자금의 분류 및 계좌관리) ① <삭제 2021.10.28.>

②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을 위한 계좌개설은 법인명의로 하고, 공사에 사용인장으로 등록한 법인명의의 사장인(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

- 용)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5>
- ③지사 자금은 유지에 필요한 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사장과 자금운용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필요시 본사로 송금하여 본사에서 관리한다. <개정 2021.10.28.> ④금융상품투자 운용자금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

류하여 운용한다. <개정 2016.2.5.><개정 2021.10.28.>

#### 1. <삭제>

- 2. 단기운용자금: 단기자금은 1년 미만으로 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,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나누고 현금성 자금은 다시 수시입출자금과 사업대기성자금으로, 유동성자금은 수익성추구자금과 적정유동성자금으로 구분한다.
- 가. 현금성자금 내 수시입출금자금 : 일일영업자금과 매입비결제를 대비하여 보유하는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금으로 보유기간이 1개월 이내의 자금
- 나. 현금성자금 내 사업대기성자금 : 만기 3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금융자금(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이내로 운용되는 적정 유동성)
- 다. 유동성자금 내 수익성추구자금 : 유동성 일부를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환매성 있는 자산에 투자된 자금 라. 유동성자금 내 적정유동성자금 :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

- 3. <삭제>
- 4. 중장기운용자금 : 자금운용 수익의 제고를 위하여 1년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기관 자산 중, 단기자금을 제외한 모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

[제2장 2절에서 이동 <2021.10.28.>]

[본조제목개정 2021.10.28.]

제7조의2(적정유동성 자금배분) 매년 산정된 적정유동성은 전체 포트 폴리오의 단기운용자금으로 관리한다. 적정유동성의 추정방식 및 규 모는「연간 자금 운용계획」에서 정한다.

[본조 신설 <2021.10.28.>]

#### 제 2 절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<개정 2021.10.28.>

제8조 <삭제 2021.10.28.>

제9조 <삭제 2021.10.28.>

제9조의2(목표수익률) ①목표수익률은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목표치이자 자금배분 제약조건으로서, 자금의 운용기간, 국내외 금리상황, 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연간 운용가능 평잔고려 후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.

②구체적인 목표수익률은 주관부서별 연간 계획 수립 시 작성한다.

[본조 신설 <2021.10.28.>]

제10조 <삭제 2021.10.28.>

제11조 <삭제 2021.10.28.>

제12조 <삭제 2021.10.28.>

제13조 <삭제 2021.10.28.>

- 제13조의2(허용위험한도) ①허용위험한도는 5년간 자금운용배분안의 누적투자수익률이 0%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% 이하로 통제한 다.
  - ②구체적인 허용위험한도의 계산방법은 「연간 자금 운용계획」에서 정한다.
  - ③그 외 위험에 대해서는 제4장 제1절 위험관리를 통해 관리하고, 필요할 경우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<2021.10.28.>]

#### 제 3 절 자금배분 및 운용<개정 2021.10.28.>

- 제13조의3(자금배분원칙) ①공사는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, 중장기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, 혁신투자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배분원칙을 수립한다. 자산군별 자금배분비율은 「연간자금 운용계획」에서 정한다.
  - ②자금배분 재조정은 허용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

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자금배분을 재조 정 할 수 있다.

- ③공사는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산 운용하여야 한다.
- ④제13조의5에 의한 투자 시, 1개 기관에 자금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. 다만, 보통예금, MMDA, CMA, MMF, MMT 및 국가, 지방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그렇지 아니하다.
- ⑤제13조의5 제4항 내지 제6항의 유가증권 중 발행기관(채무자)이동일한 유가증권의 매입 합계액은 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[제5조, 제10조 이동 및 본조 신설 <2021.10.28.>]

제13조의4(받을어음의 할인에 대한 특례)공사는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어음을 할인하여 수익성 향상이 예상되는 경우, 금융상 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 받을어음을 할인할 수 있다.

[제11조에서 이동 <2021.10.28.>]

- 제13조의5(운용대상 자산군) ①공사의 금융상품 투자자금은 다음 각항에서 정하는 자산군을 운용 대상으로 한다.
  - ②제14조의2 기관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

#### <개정 2024.3.7.>

- 1. 보통예금
- 2. 정기예금
- 3. 양도성예금증서(CD)
- 4. 표지어음
- 5. 환매조건부채권(RP)
- 6. 기업어음(CP)
- 7. MMDA(Money Market Deposit Account), CMA(Cash Management Account)
- 8. MMF(Money Market Fund), MMT(Money Market Trust)
- 9. 국내·외 채권형 펀드
- 10. 투자금액의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주가 또는 금리연계 파생금 융상품
- 11. 제13조의5 제9항에 따른 투자대상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상품
- 12. 채권ETF(Exchange Traded Fund)
- 13. 기타 안정성과 수익성이 기대되는 상품
- ③국가, 지방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
- ④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
- ⑤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(이하 "금융채"라 한다)
  - 1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

- 2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
- 3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
- 4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5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- 6. 「은행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또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
- ⑥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기업어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채 및 기업어음의 매입
  - 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 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2이상의 자로부터 신용평 가등급이 (A)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보증기 관이 지급보증한 사채 또는 기업어음
  - 2.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담보 사채
  - 3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 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2이상의 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이 (A)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채 및 기업어음
-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외신용등급이 S&P 기준으로 (A)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인 해외채권(해당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발행기관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). 단, 환혯지 방안이 마련된 경우에 한한다.
  - 1. 외국의 정부,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관(정부가 투자하였거나 또는

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기관)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 권

- 2.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
- 3.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으로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
- ⑧외화로 표시된 제4항부터 제6항의 채권에 대해서는 제7항을 준용 한다.
- ⑨제2항제11호의 구조화상품은 다음 각 호를 기초자산으로 한다.
  - 1. 부동산 실물자산 관련 투자
  - 2. 사모부투자전문회사(PEF) 관련 투자
- 3. 특수목적법인(SPC) 및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관련 투자 [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<2021.10.28.>]

제14조 <삭제2021.10.28.>

- 제14조의2(운용기관) 공사가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은행법」 제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
  - 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의한 한국산업은행
  - 3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은행
  - 4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

- 5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
- 6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체신관서
- 7. 국가, 지방단체,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
- 8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증권회사
- 9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(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)와 투자자문회사

[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<2021.10.28.>]

제14조의3(위탁운용) 공사는 투자자금의 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 효과를 얻기 위해 제14조의2 제8호, 제9호에서 명시한 위탁운용사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22.9.28.]

#### 제 3 장 혁신투자<신설 2021.10.28.>

- 제15조(운용원칙) ①혁신투자는 주식, 채권, 예금 등의 금융상품 투자 영역을 보완하고 확장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. <개 정 2021.10.28.>
  - ②혁신투자는 투자기간의 장기성, 유동성의 부족 및 투자의 비정형성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0.28.>

- ③혁신투자는 중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, 투자 원리금 회수가 미완료된 사업이나 원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조건 및 약정사항 점검 등 지속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원리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0.28.>
- ④혁신투자는 투자 실행에 있어서 외부전문기관(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)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8.>

[본조신설 2016.2.5.]

- 제16조(투자대상) 혁신투자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 <신설 2016.2.5.><개정 2021.10.28.>
  - 1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문화산업 관련투자
  - 2. 부동산 등 실물자산 관련 투자
  - 3. 사모투자전문회사(PEF) 관련 투자
  - 4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의거한 벤처투자
  - 5. 특수목적법인(SPC)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관련 투자
  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해외 투자
  - 7.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7조(운용기관) 공사는 제16조의 투자대상에 직접 투자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제18조에 명시한 위탁운

용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. <신설 2016.2.5>

- 제18조(위탁운용사)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기관이 실질적인 운용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운용하는 기관을 위탁운용사로 본다. <신설 2016.2.5.> <개정 2021.10.28.>
  - 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은행
    -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집합투자업자
    - 3.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31조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
    - 4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의5호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
    - 5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
  - 6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9항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
  - 7. 그 밖의 법규에 의하되, 공사가 위탁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탁운용사
- 제19조(위탁운용사의 선정) ①위탁운용사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이 되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<개정 2021.10.28.>
  - 1. 경영안정성
  - 2. 운용실적

- 3.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
- 4. 운용조직 및 인력
- 5. 위험관리 체계
- 6.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필요한 사항
- ②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. <개정 2021.10.28.>
  - 1. 일괄방식: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다수의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
  - 2. 건별방식 :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식
  - 3. 기타방식: 제5조의3 제5항에 따라 혁신투자 자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여부를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 경우, 그 투자 대상을 제안한 운용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방식

#### [본조신설 2016.2.5]

- 제20조(위탁운용사의 관리) ①관련 투자분야의 위탁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관리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 - 1.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
  - 2. 포트폴리오 내역
  - 3. 계약내용 준수 여부
  - 4. 주요 운용인력 변동사항

②투자분야의 위탁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2.5]

제21조 <삭제 2021.10.28.>

제22조 <삭제 2021.10.28.>

# 제 4 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<신설 2021.10.28.> 제 1 절 위험관리<신설 2021.10.28.>

- 제23조(위험관리의 원칙)①자금운용 수익은 위험에 대한 관리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서 자금운용이 규칙상의 운용원칙에 부합하도록 한다.
  - ②자금운용의 위험관리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수익에 비해 과 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둔다.
  - ③위험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2.9.28.>

[본조신설 2021.10.28.]

- 제24조(위험의 정의) 자금의 관리·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크게 시장위험, 신용위험, 유동성위험, 운영위험 등으로 나누어 관리한다.
  - 1. 시장위험(Market Risk)은 금리나 주가·환율 등 시장변수가 불리

하게 변동하여 자산이나 부채 등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을 의미하며, 금리위험이 주된 시장위험으로 작용한다.

- 2. 신용위험(Credit Risk)은 발행자의 파산, 채무재조정 등에 따라 투자원리금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능 상태가 되거나 발행자 신용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금융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3. 유동성위험(Liquidity Risk)은 과도한 장단기 투자로 매입비 결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으로 운용자산의 시장 내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매매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화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.
- 4. 운영위험(Operation Risk)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 미비에 기인한, 업무처리절차 및 실수 또는 부정 관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.

#### [본조신설 2021.10.28.]

제25조(위험측정 대상 및 관리방법) ①자금운용에 대한 위험은 계량화가 가능할 경우 시장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한다.

②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「연간 자금 운용계획」에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1.10.28.]

#### 제 2 절 성과평가<신설 2021.10.28.>

- 제26조(성과평가의 원칙) ①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금운용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.
  - ②자금운용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및 운용결과를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보고하고, 주요사항은 자금운용 에 반영한다.
    - 1.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결과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, 혁신투자 자금운용결과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- 2. 연간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(예치)에 관한 사항(상품명, 예치금액, 금리, 예치기간, 수익률)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금융상품투자자금운용위원회와 혁신투자 자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.
  - ③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2.9.28.>

[제12조, 제2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.10.28.]

- 제27조(성과평가의 기준) ①성과평가 시에는 실현된 운용실적 이외에 자산의 건전성, 유동성, 위험관리, 운용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  - ②성과평가는 해당기간의 단순수익 뿐 아니라, 목표수익률과 벤치마 크를 비교한 초과수익률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평가하고, 필요 시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③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은 금융상품투자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10.28.]

#### 제 5 장 선관주의 원칙<신설 2021.10.28.>

- 제28조(관리자의 준수의무) 자금운용 관련 담당자는 자산의 수탁 관리 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관리자는 관계법령, 자금운용 관련 제반규칙 및 운용세칙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선량한 자세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- 2.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전문역량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, 제반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 로 독립적이며,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.
  - 3. 관리자는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4. 관리자는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자금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, 개인적인 보상 또는 이익을 취하는 등 품위 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  - 5. 관리자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물질적·금전적 반대급부를 받아

서는 안 되며,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(리서치자료 등), 운용관련 서비스에 국한하여야 한다.

6. 자금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,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.

[본조신설 2021.10.28.]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4.3.21.>

이 규칙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5.2.12.>

이 규칙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5.4.16.>

이 규칙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6.2.5.>

이 규칙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6.7.1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9.4.23.>

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0.8.18>

이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0.8.18>

이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<2021.10.28.>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2.9.28.>

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24.3.7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(별표) <신설 2022.9.28.>

# 자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도

